# 중소·중견기업을 위한
#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제안서

DAERYOOK & AJU LLC / 2022. 11. Private & Confidential

법무법인(유한) 대륙아주 부설
미래노사경영연구소

# 01
# 제안배경

# 1. 중대재해처벌법 개요

| | | |
|---|---|---|
| **목적** | 사업 또는 사업장,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·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 법인을 처벌 | |
| **시행일** | 2022. 1. 27.<br>※ 단,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(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)에 대해서는 2024. 1. 27. | |
| **중대재해의 종류** | **중대산업재해** | **중대시민재해** |
| |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의 산업재해로서 다음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<br>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<br>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<br>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|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<br>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<br>②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<br>③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 |
| **처벌의 내용** | ✓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형사처벌<br>(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)<br>✓ 법인 또는 기관 벌금형<br>(사망자 발생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)<br>✓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(배상한도: 손해액의 5배)<br>✓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이수 명령 | |

# 2. 중대재해처벌법 특징 (vs. 산업안전보건법)

| 구분 | 산업안전보건법 | 중대재해처벌법 |
|---|---|---|
| **처벌 대상** |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<br>(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) | **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**<br>(대표자, 최고안전보건책임자(CSO) 등) |
| **보호 대상** | 노무를 제공하는 자<br>(근로자, 관계수급인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보호 대상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나, 대부분의 의무조치는 '근로자' 위주로 적용됨) | **종사자**<br>(근로자, 도급·용역·위탁 등에 따른 노무제공자, 수 차례의 하도급이 이뤄지는 경우 각 단계별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) |
| **적용 범위** | ✓ 사업 또는 **사업장**<br>✓ (도급의 경우) 도급인이 제공·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·관리하는 21개 위험장소 | ✓ **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** 또는 사업장<br>✓ (제3자 도급, 용역, 위탁 등의 경우) 해당 시설, 장비,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경우 |
| **의무의 내용** | **안전보건 조치의무**<br>[예시] 안전·보건조치(안전보건규칙), 안전보건표지 설치·부착, 건강진단, 안전보건교육, 작업환경측정, 방호조치 | **안전보건 확보의무**<br>[예시] 안전보건 목표·경영방침 수립, 안전보건 전담조직, 안전보건예산 편성·집행,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받는 자에 대한 평가 |

# 02
# 컨설팅 제안

# 1.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Point

| | | |
|---|---|---|
| 중대재해처벌법 해석 및 적용 | | ✓ 경영책임자등의 범위는?<br>✓ 종사자의 범위는?<br>✓ 실질적 지배·운영·관리의 의미와 범위는? |
|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 | 경영자 리더십 | ✓ 안전보건 목표·경영방침 수립<br>✓ 안전보건 전담조직 및 사업장별 안전보건조직 간 보고체계 구축<br>✓ 안전보건예산의 적정성 확보 |
| | 종사자 참여 | ✓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의 적법성 확보<br>✓ 적극적 안전보건 관련 의견 제시 가능한 조직문화 구축<br>✓ 종사자 의견청취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마련 및 이행점검 |
| | 유해위험요인 관리 | ✓ 위험성평가의 적법성 및 작동성 확보<br>✓ 위험성 개선대책 마련 및 이행점검<br>✓ 유해위험요인 관리방안의 구축 |
| | 재해대응체계 구축 | ✓ 비상대응매뉴얼 마련 (대응조치, 구호조치,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)<br>✓ 정기 비상대응훈련 실시 및 비상대응매뉴얼 보완 프로세스 구축<br>✓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대책 수립 및 조치 |
| | 도급·용역·위탁 시 안전보건관리 | ✓ 안전보건조치능력 평가기준 및 절차 수립·운영<br>✓ 협력·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감독 및 지원<br>✓ 안전보건 표준계약서 마련 |
| | 평가 및 개선 | ✓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정리<br>✓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점검 시스템 구축<br>✓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이행점검 시스템 구축 |

**안전보건 법률컨설팅**

**안전보건 기술컨설팅**

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

| 구분 | 컨설팅 내용 | 컨설팅 결과물 |
|---|---|---|
| 필수 | ☐ 법령 해석 및 적용 | 해설서 및 법률의견서 |
| | ☐ 현행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수준 점검 | 안전보건 확보의무 점검결과 보고서 |
| | | 안전전담 조직구성 및 조직원 R&R |
| 선택 | ☐ 제규정 점검 및 개정 |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제규정 개정 |
| | ☐ 필수서류 점검 및 구축 | 미비서류 구축 |
| | ☐ 협력·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점검 | 협력·하청업체 평가기준 및 절차, 안전보건 표준계약서 등 |
| | ☐ 중대재해 수사대응 프로세스 점검 | 수사대응 매뉴얼 |
| 진흥원 | 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| ISO 45001, KOSHA MS에 기반한 시스템구축 컨설팅 및 인증 지원 |
| | ☐ 안전관리 점검 | 안전관리표준작업절차서, 지침서 |
| | ☐ 위험성 평가 | 유해위험요인 파악, 위험감소대책 수립 및 운영방안 지원 |
| | ☐ 수시 모니터링 | 현장작동성 및 감독의 실효성 확보 |

# 2.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수행 일정 (예시)

| STEPS OF PROJECT IMPLEMENTATION | | | TIME SCHEDULE |
|---|---|---|---|
| Step 1 | 점검자료목록 송부 및 준비 | - 컨설팅 배경 및 목적, 일정 소개<br>- 점검자료 목록 송부 | 1st~2nd week |
| Step 2 | 점검자료 검토 | - 수취자료 검토<br>- 판례 분석 등 | 2nd~3rd week |
| Step 3 | 인터뷰 | - 담당자 인터뷰<br>- 필요시 근로자 인터뷰 | 3rd~5th week |
| Step 4 | 점검보고서 작성 | - 점검보고서 작성<br>- 개선방안 도출 | 5th~7th week |
| Step 5 | 보고서 설명 실시 | - 보고서 작성 후 설명<br>- 향후 개선방향 논의 | 7th~8th week |
| Step 6 | 개선사항 자문 | - 개선사항 자문 (내규 개정, 협의등)<br>- 노사분쟁 발생 시 대응 관련 자문 | 8th~10th week |

# 3. 컨설팅 비용

- 주요업무: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 컨설팅
  - ✓ 기업 내 안전보건 관련규정 검토
  - ✓ 실무자 인터뷰
  - ✓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수준 점검
  - ✓ 개선안 자문
- 비용: **개별 협의 후 결정**
  - ✓ 변호사 및 전문가의 시간당 보수요율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, 개별 협의에 의하여 결정

| 전문가 | 시간당 보수 (부가세 별도) |
|---|---|
| 대표변호사 | 1,000,000 |
| 파트너 변호사 | 600,000 |
| 워킹파트너 변호사 | 400,000 |
| 어쏘 변호사 | 300,000 |
| 노무사 등 전문가 | 200,000~400,000 |

# 03
# 수행 인력

# 미래노사경영연구소 컨설팅 수행인력 소개

| 수행인력 | 직 책 | 주요 이력 |
|---|---|---|
| 오길성 소장 | 연구소장 | · 現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<br>· 前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(심판 · 조정 담당)<br>· 前 중부고용노동청 노사협력관<br>· 前 민주노총 부위원장 |
| 김보훈 변호사 | 법제팀장 | · 前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행정사무관<br>· 前 한국도로공사 법무실 |
| 최현준 변호사 | 수석연구원 | · 前 새올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<br>· 前 법무법인 조율 소속 변호사 |
| 김아름 변호사 | 책임연구원 | · 前 대구고등법원 재판연구원<br>· 前 대구지방법원 재판연구원(노동전담) |
| 최낙현 노무사 | 정책팀장 | · 前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<br>· 前 노사발전재단 위촉 노사상생프로그램, 일터혁신컨설팅 책임수행 컨설턴트<br>· 前 근로복지공단 위촉 선진기업복지(우리사주조합, 근로복지기금 등) 컨설턴트<br>· 前 노무법인 로정 대표 노무사 |
| 박찬욱 노무사 | 책임연구원 | · 前 천안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 차장<br>· 前 현명 노동법률사무소 소속 노무사 |
| 송한봄 노무사 | 책임연구원 | · 前 AK LABOR CONSULTING 소속 노무사<br>· 前 ESG경영 및 중대재해 대응 컨설팅 수행 |
| 윤성원 노무사 | 선임연구원 | · 前 ㈜휴램프로 소속 노무사<br>· 前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대응 컨설팅 수행 |


법무법인(유한) 대륙아주 부설
미래노사경영연구소